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환경관리 Q&A

회원사 및 배출사업장 환경기술인 및 관리자분들의 환경관리업무에 도움을 드리고자 자주 질의·문의·상담되는 환경관리 질의응답 사례를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자가측정대행 항목 선정은?

현재 회사에서 배출시설 중 화성처리시설인 염화FLUX조를 배출시설로 추가 설치 신고를 하고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 배출시설에 사용하는 약품(원료)은 염화아연과 염화암모늄만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 배출시설을 신고하고 자가측정대행을 행하여야 하는데 측정대행 오염물질로는 아연과 암모니아만 의뢰하면 되는지 아니면 분자식에 "Cl"이 들어가기에 염화수소 항목도 측정을 의뢰하여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염산은 전혀 사용하지 않고 염화아연과 염화암모늄만 사용하는데 "Cl" 원소 때문에 굳이 염화수소를 측정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자가측정은 당초 허가 또는 신고 받을 당시의 사용원료, 부원료, 첨가제, 공정조건 등을 감안하여 대기배출시설에서 배출될 것으로 예상하여 제시한 대기오염물질에 대하여 자가측정을 하는 것으로, 질의하신 염화수소는 자가측정 대상항목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Q 폐기물 배출자 및 배출신고 대상여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하여 배출자 신고주체 및 배출신고 대상여부에 대하여 문의코자 합니다. 발주청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현장에서 발생하는 100톤 이상의 건설폐기물은 분리발주 대상으로서 발주청이 "배출자"로 신고하여야 하고, 건설폐기물 이외 폐유류, 폐페인트 등 지정폐기물은 분리발주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지정폐기물도 발주청에서 배출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분리발주 대상이 아니므로 건설회사에 폐기물처리업체를 선정하여 처리하는 경우 동 지정폐기물에 대하여는 건설회사가 배출자로서 배출신고를 해도 되는지 문의합니다. 또한, 월 50kg 발생하는 지정폐기물에 대하여 배출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지정폐기물처리계획 확인대상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건설공사 과정에서 지정폐기물이 발생되는 경우 발주자가 폐기물처리계획 확인을 받아야 하며, 지정폐기물을 위탁처리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발주자가 직접 해당 지정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자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Q 소각재처리방법은?

제가 근무하는 업체가 소각로를 가동하고 있는데 소각재 강열감량이 기준치인 10% 이상이 나옵니다. 소각재 강열감량이 기준치 이상 나올때 소각재시설 운영기준에 어떤 문제가 되는지와 문제가 되면 그 근거 법규는 무엇인지? 소각재 강열감량이 기준치 이상일때 소각재를 소각재 재활용업체로 보내서 재활용처리하면 강열감량이

기준치 이상에 대한 법적 문제가 해결되는지? 소각재 강열감량이 기준치 이상일때 매립장으로 반출 매립처리해도 되는지?

A 소각재의 강열감량은 소각 후 남은 소각재(바닥재)를 다시 고온으로 태워 얼마만큼 감량이 있는지를 분석하여 소각 시 연소조건을 제대로 준수하여 소각시설을 운영하고 있는지 등 그 척도가 되는 것으로 폐기물관리법상에는 바닥재의 강열감량 기준을 10% 이하(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소각하는 시설로서 시간당 처분 능력이 200kg 미만인 소각시설의 경우에는 15% 이하)가 될 수 있는 소각 성능을 갖추도록 규정(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9] 제1호나목2)(3))하고 있으며, 그 이상 초과하였을 경우 행정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소각재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제3호라목2)가)의 규정에 따라 관리형매립시설에 매립하거나 안정화처리 또는 시멘트·합성고분자화합물을 이용하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고형화처리하여야 합니다.

Q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인지?**

토지상 6층 건물에 준공당시(1994. 4. 22) 1일 평균 오수처리량이 63.00m³인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가동 중 2012. 4. 17경 건축물 용도표시 변경 신청(제1종 근린생활시설 : 금융업소 > 제2종 근린생활시설 : 일반음식점)으로 1일 오수발생량이 17.485m³ 증가(변경전 오수량 31.205m³ > 변경 후 오수량 48.69m³)되었는 바, 이 경우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인지 여부?

A 하수처리구역내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이 설치된 건축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경우로서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처리하지 않는다면 오수발생량이 1일 10m³ 이상 증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인자부담금부과 대상은 아닐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하수도법」 제28조에 따라 공공하수도 유입제외 허가를 사전에 취득하여야 하며, 하수관거를 이용하여 하천으로 방류하는 경우에는 하수관거 사용료는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Q **수질방지시설 변경운영시?**

현재 근무지에서 수질방지시설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방지시설 최종처리 단계에서 모래여과필터를 거치고 최종적으로 pH를 조정한 후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래여과필터 전단계에서의 수질이 법적배출기준 이내의 수질을 항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적배출기준 이내의 수질을 유지한다면 모래여과필터를 거치지 않고 pH만 조정 후 최종방류를 해도 무관한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모래여과필터를 거치지(운영) 않고 배출 시 법적으로 신고사항이나 저희 회사에서 진행해야되는 사항에 대해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A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 제1항 제4호 및 제6호 규정에 의거 폐수처리공정을 변경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일부를 폐쇄하는 것으로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